

발간등록번호

71-6410000-000965-10



2022 경기도



구제합리화 우수사례집

규제혁신은
기업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문화, 기술 등 시대적 변화에 맞게 규제를 정비하고 품질을 높여 국민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기업에게는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경기도는 2022년도에도 도민의 생업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데 힘썼습니다. 민생규제 공모전, 시군 순회간담회 등 현장밀착형 규제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규제개혁 수단인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신기술이 시장에 출시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시군의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엮어 공유함으로써 좋은 사례가 널리 확산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록된 사례는 타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산업, 생활불편, 기업애로, 공공행정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배경, 개선내용, 효과를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경기도는 민선 8기에도 도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먼저 풀 수 있도록 자치법규에 대한 심사,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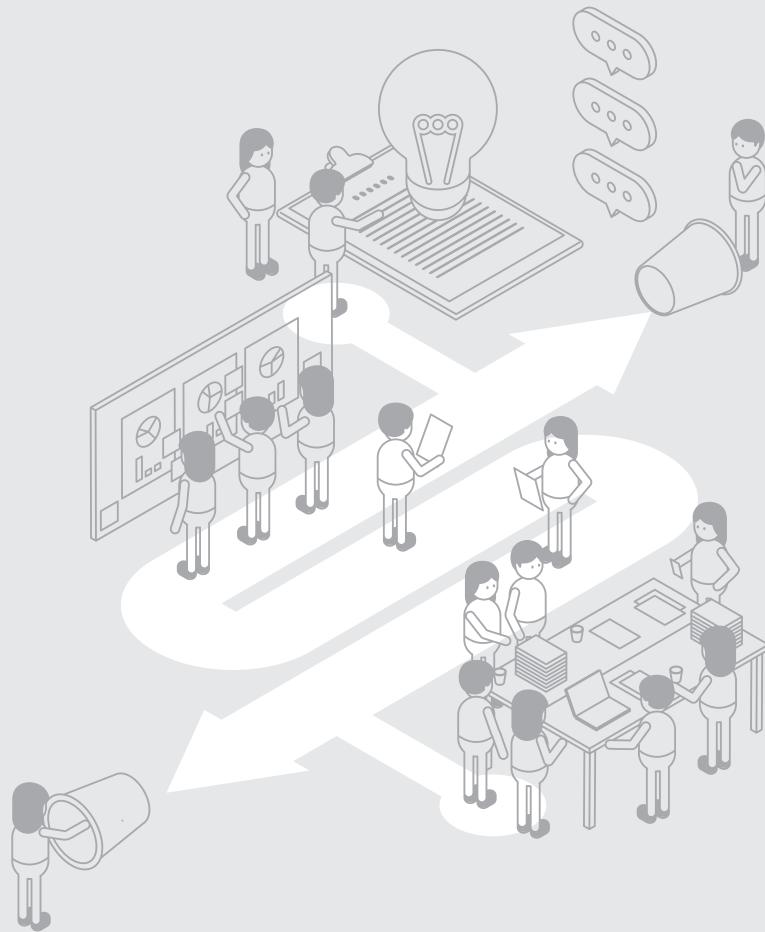
2023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도민생활의 어려움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경제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행적으로 적용돼서 도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공무원의 행태로 인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규제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경제부지사 염태영

Contents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신산업

0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완화	9
02 글램핑, 조립식 둠텐트로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기다	12
03 인공지능(AI) 기반의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14
04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 공개 확대	16

생활불편 해소

01 경기도 소상공인 적용 범위 확대	21
02 영유아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선	23
03 시내버스 행정구역 경계거리 완화	25

기업애로 해소

01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	31
02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합리화로 곤충산업 진입장벽 완화	36
03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 · 전기차 복합충전소 구축	40
04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43
05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세부 운영 개선을 통한 규제 합리화	45
06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 없는 공장 규모 완화	47
07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	49
08 숲속야영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	50

공공행정

01 남한산성 농막 설치 허가기준 운영 및 녹지조성 추진	55
02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추진	57
03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60
04 “수십년 안보 위한 희생”... 규제합리화로 토지소유자 권리 회복	63
05 흥수방어 패러다임 전환으로 하천 규제 개선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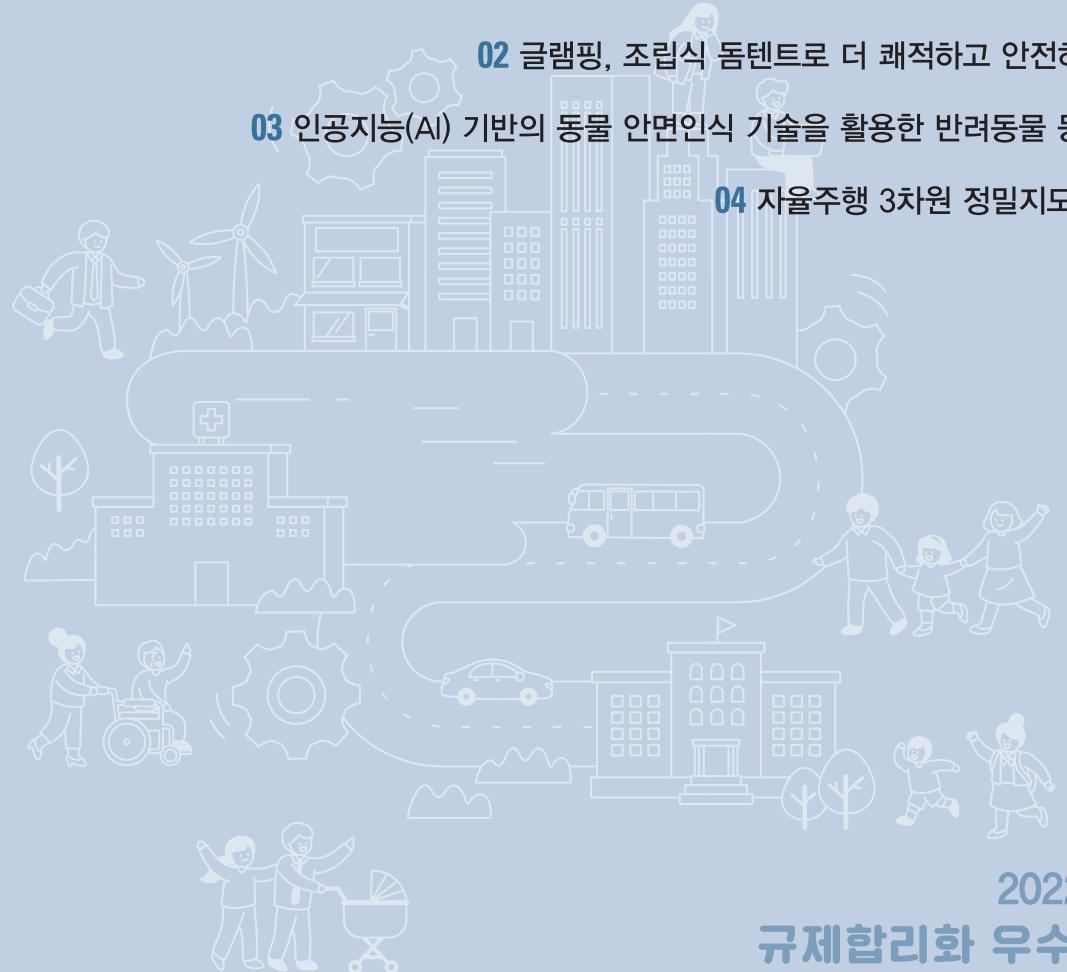
신 산업

0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완화

02 글램핑, 조립식 봄텐트로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기다

03 인공지능(AI) 기반의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04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 공개 확대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0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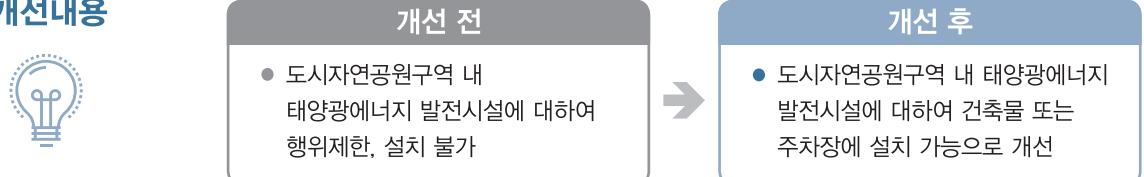
추진부서 경기도 화성시 공원조성과 ☎ 031-5189-6131

개선배경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 등의 차원에서 20년이 경과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 도입됨. 그러나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을 방지코자 2005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용도지역 신설
- 동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린벨트 등과 같이 엄격한 행위제한 수반
→ 이에,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존 건축물, 주차장 내 태양광 시설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미허용 시설로 설치 불가,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과 소득 재창출을 위한 건축물 등의 효율적인 활용이 지난
→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

개선내용



- '21.01.13.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 '21.06.17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선정 (국무조정실)
※ 전국적으로 총 338건의 과제 제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하여 최종 32건에 선정
- '21.12.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개선효과



- 소외 지역에 대한 태양광에너지 활성화로 관련 산업 발전 기대
- 지속적인 행위제한 완화로 토지소유자(점유자) 민원방지 저감 기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원활한 관리 유도
- 태양광 발전에 따른 수익창출로 일부 소득증대 기대

[설치비용] 200kw 이하의 경우 설치금액의 70~80%까지 지원 (일반 주택용 3kw 설치비용 약 516만원으로 보조금 지원시 103만원 자부담)

[수익창출] 일반 주택용 3kw 태양광 설비 기준, 월 약 300kw 전력생산 (월 5~6만원 전기요금 절감 예상)



[태양광에너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불가능을 가능으로 규제혁신 하다.



화성시 공원조성과 원찬희 031-5189-6131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일몰제가 시행됨으로서 당초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가 일소(一掃)에 해제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몰제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 해당 토지주, 점유자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도시공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차에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 과제” 제출을 요청받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치 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21.12.2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이로인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위치한 공장, 축사, 일반주택 등의 건축물과 주차장에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에 따른 소득창출이 기대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기존 공공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2 글램핑, 조립식 돔텐트로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기다.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287

개선배경



- 국내 캠핑인구가 300만명에 이르고, 캠핑시장도 6,000억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하는 등 야영(캠핑) 활동이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글램핑 시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현행법령은 야영시설을 경직된 개념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제품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었음.
-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하여야 하므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동 제품은 제한되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도 모호한 상황임.

[애로사항] 해당 제품은 기존 천막텐트 대비 자연재해 및 화재에 강하여 단열과 방풍 기능이 우수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이어서 사용기간도 깊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규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음

※ 관련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 2관련, 「별표 1」 야영장 시설의 종류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소재의 조립식 돔텐트 제작 가능

개선내용



개선 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야영시설은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며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Fiber Reinforced Plastics)*을 사용한 조립식 돔텐트는 제작이 불가능하였음



개선 후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동별 크기 및 복층구조 제한 등 안전기준을 이행하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진 텐트를 야영장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

*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 플라스틱 수지 사이에 유리섬유를 넣어 강도를 높인 소재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특례를 받아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로 제작되고, 분해·조립이 용이한 조립식 돔텐트를 야영장에 판매 가능

[글램핑용 돔텐트 구조 및 형태]



추진과정

24

- '21. 03. 17.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 '21. 04. 20.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기업 면담 실시
- '21. 06. 01. 산업융합 규제실증특례 신청
- '22. 02. 25. 제1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 결과, 실증특례 승인
- '22. 04. 18.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대상 선정(실증사업비 등 지원)

개선효과



- 기존 천막텐트 대비 단열과 방풍기능이 우수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이 가능하여 안락한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야영시설 제작·판매가 가능하고, 반영구적이어서 기존 천막텐트보다 사용기간이 길어 설치하는 캠핑장의 만족도 제고
- 캠핑 이용객들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야영장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03 인공지능(AI) 기반의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287

개선배경



-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반려동물 등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호기심에 의한 분양과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마다 약 1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음.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지 8년여가 지났으나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동물등록제 등록률(농림축산식품부) : 2018년 20.5%, 2019년 24.4%, 2020년 27%, 2021년 37.4%

-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이유로는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응답이 35.5%로 가장 높았으며, '동물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7%,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라는 응답이 16.8% 순으로 나타남.
-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대상 동물임. 이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에 따라 동물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체내주입형, 외장형)로 한정되어 있으며, 동물안면인식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였음.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몸 안에 칩을 넣거나 동물개체정보가 담긴 목걸이 또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는데, 칩 방식은 반려동물에게 통증을 주기 때문에, 목걸이와 인식표는 분실의 위험이 있어 반려인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있었음.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등록 서비스로 모바일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여 등록이 가능

개선내용



- | 개선 전 | 개선 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현행 동물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체내주입형, 외장형)로 한정되어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공지능(AI) 기반의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동물등록 방법은 보호자가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으며 무선식별장치 체내주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음 | |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 서비스]



- '21. 06. 04.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 '21. 06. 21.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기업 면담 실시
- '21. 07. 15. ICT 규제실증특례 신청
- '21. 12. 23. 제21차 ICT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결과, 실증특례 승인

개선효과



- 등록비용이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하여 동물등록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유기·유실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비용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실증특례 승인으로 인한 효과]
- ① 투자유치 :** 2022.10월 현재 Angel 5억 및 VC 프리A 5억의 총 10억 투자유치 진행 중이며, 계약을 위한 사전 협의단계
 - ② 매출현황 :** 2021년 약 1천만원에서 2022년 2억으로 향상, 사업계획서상 2023년 매출은 약 41억으로 추산(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양수도 계약)하여 개인사업자 매출포함)
 - ③ 고용창출 :** 2021년 1명, 2022년 2명 고용 / 2023년 7명 추가 고용 예정으로 향후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효과를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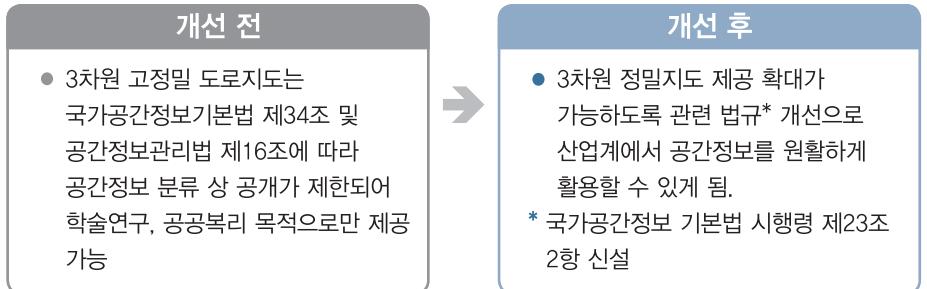
04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 공개 확대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287

개선배경

- 자율주행 기업 등에서 정밀 도로지도를 자체 제작한 경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4조 및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 분류상 공개가 제한될 수 있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필수적인 정보이나, 공개제한으로 인해 자율주행 산업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
** 운전자가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정해진 도로와 조건에서 스스로 운전*
- 또한 국내 정밀지도의 해외 공개가 제한되어 있어 자율주행 기술개발의 국제협력 활성화에 한계 발생

개선내용



추진과정



- '21. 01. 13. 규제혁신 방안 국조실 건의 (도 → 국무조정실)
- '21. 06. 17. 국무조정실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에 선정
- '22. 03. 15.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2항 신설

개선효과



- 3차원 정밀지도를 산업계에 제공하여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스트레이트'뉴스
HOME > 전국

3차원 정밀지도, 산업용 활용가능…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조회자 1 | 승인 2021.07.02 15:28

경기도,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4건 정부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에 선정
국무조정실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에 경기도에서 건의한 신산업 규제혁신 건의
과제 4건 선정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 디지털 트윈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도시공원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등 담아



자율주행차 시대!
3차원 정밀 지도로 안정성을 높인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개정 내용]

이전	개정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	②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제3항, 제4항,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2. 3. 15.〉 1.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를 완료하였을 것 2. 제공을 신청받은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6. 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설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처리하여 제공해야 한다.〈신설 2022. 3. 15.〉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암호화 등 보안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2. 3. 15.〉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5. 6. 1., 2022. 3. 15.〉
⑥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6. 1., 2022. 3. 15.〉	⑥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6. 1., 2022. 3. 15.〉

생활불편 해소

01 경기도 소상공인 적용 범위 확대

02 영유아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선

03 시내버스 행정구역 경계거리 완화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01 경기도 소상공인 적용 범위 확대

 추진부서 경기도 소상공인과 ☎ 031-8030-2982

개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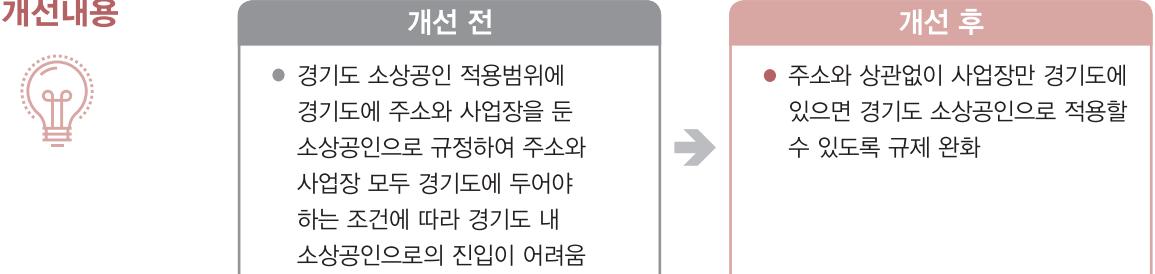
- 경기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진입제한 규제가 존재함을 밝굴.
* 도민생활 및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소관부서가 규제조치 필요성을 입증·설명하도록 하는 제도. 밝굴된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개선권고등의 조치를 취함
- 경기도 소상공인 적용범위에 경기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여 주소와 사업장 모두 경기도에 두어야 하는 조건에 따라 경기도 내 소상공인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

[현 행]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경기도(시·군)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도내에서 종업원(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소상공인 인정범위 확대 필요성 대두

개선내용



※ 다만, 창업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민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으로 한정

- '22.06.02. '22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개선권고'
- '22.09.22. 소상공인 지원 적용범위 관련 업무협의(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22.10.07. 경제노동위원회 도의원 면담(조례 개정안 관련 협의)
- '22.10.17. 규제완화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21.
- '22.11.30.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대표발의 고은정)
- '22.12.06. 상임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의결(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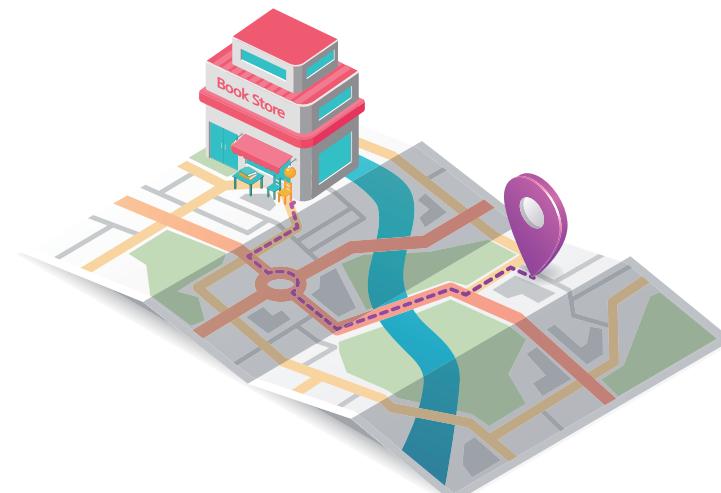
개선효과



- 소상공인으로의 진입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지역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도모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u>주소와 사업장</u> 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u>창업예정자</u> 에 대하여는 제7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u>사업장</u> 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u>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창업예정자</u> 에 대하여는 7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02 영유아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선

추진부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 031-8008-4953

개선배경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곳으로 가정적인 분위기로 영유아가 적응하기 쉽고,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등원의 편리함이 있는 어린이집임
- 다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제1호 나목, 제 16호에 따라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자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의거 적법하게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한 경우 인접한 세대의 입주자등에게 동의를 받지 못하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유아의 보육 받을 권리와 어린이집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임.

개선내용



- 개선 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은 어린이집도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에게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게 됨



- 개선 후**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제1호나목 및 제53조제6호에서 어린이집 부분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법과 상충하는 부분 해소
-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에서 어린이집 삭제

* 입주자등에게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도 영업이 가능해짐

- '22.05.11. 규제개선을 위한 시·군 간담회 건의(과천시)
- '22.05.20. 규제개선을 위한 시·군 간담회 건의과제 검토결과 제출(공동주택과)
- '22.10.26. 준칙(제17차) 개정(안) 의견조회* 완료
 - *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 시·군 보육관련부서로 의견조회 결과 31개 중 30개 시·군 개정(안) 찬성
- '22.11.29.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별도의견 없음)
- '22.12.09. 준칙(제17차) 시행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영업권 보장 및 영유아의 보육받을 권리 보장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 가. (생략) (1) ~ (2) (생략)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u>어린이집</u>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1) ~(5) (생략)</p> <hr style="border-top: 1px solid black;"/>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hr style="border-top: 1px solid black;"/> <p>6. 전유부분을 <u>어린이집</u>,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p>	<p>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u>어린이집</u>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1) ~(5) (현행과 같음)</p> <hr style="border-top: 1px solid black;"/>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hr style="border-top: 1px solid black;"/> <p>6. 전유부분을 <u>어린이집</u>,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p>

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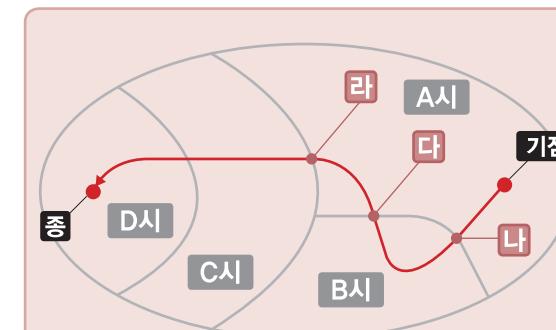
03 시내버스 행정구역 경계거리 완화

 추진부서 평택시 대중교통과 ☎ 031-8024-4694

개선배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기점과 종점이 모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법문으로 인해 평택시의 경우 안성IC를 이용하여 서울로 광역버스 운행이 불가한 상황임
 - ① 평택 → ② 안성 → ③ 안성IC → ④ 평택 → ⑤ 오산 → ⑥ 서울



- 기점이 있는 A시 외의 행정구역에서 운행거리의 총합
- '나~다' + '라~종점' 거리의 합 ≤ 50킬로미터
 - 법제처 해석 : A시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부분의 노선길이의 총합으로 계산,
관할 행정구역을 제외한 노선길이의 총합

☞ 해당규정으로 인해 평택시 시내와 인접한 안성IC, 송탄IC 등 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오산IC를 통해 고속도로를 진입하여 광역버스 이동시간 과다소요 및 서비스 수준 저하 발생

개선내용



개선 전

-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법문이 명확하지 않아 평택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안성IC를 이용하여 서울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



개선 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 개정('22. 6. 8.)
 - 운행의 효율성과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등을 이용하여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운행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제2항제2호 개정

추진과정



'20. 02. 27 법령해석 질의 회신(법제처→도·평택시)

'21. 03. 26 '21년 상반기 지자체 건의과제(시내버스 행정구역 경계거리 완화)로 제출 (도→ 행안부)

'21. 05. 24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 건의

'22. 06. 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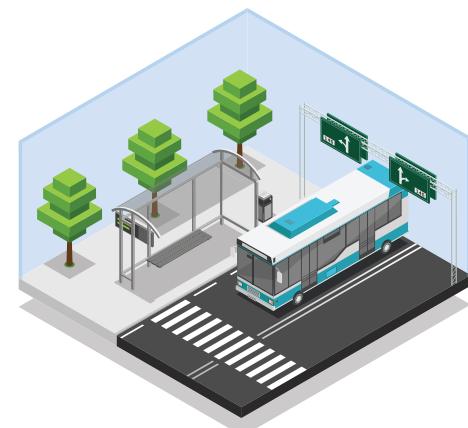
개선효과



- 안성IC 또는 송탄IC 등을 경유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신설이 가능해져 평택-서울 간 운행 시간이 대폭 감소하고 출퇴근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

※ 평택~서울간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대폭 단축

- 평택시 내 다양한 기점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신설여건 마련



평택 시민들 여객車 운수사업법 개정 '환영'

승인 2022-06-15 16:35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기자페이지 >](#)

평택 시민들이 정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기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등의 운행거리가 50km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서울행 버스노선 신설 근거가 마련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 서울·경기·세종 등 7곳 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등의 운행 거리가 50km를 초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평택지역은 서울행 버스노선 개설 요구에도 노선 신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안중·청북읍에서 서울로 향하는 노선과 고덕동에서 오산·송탄IC 등을 통해 서울로 향하는 경우 모두 50km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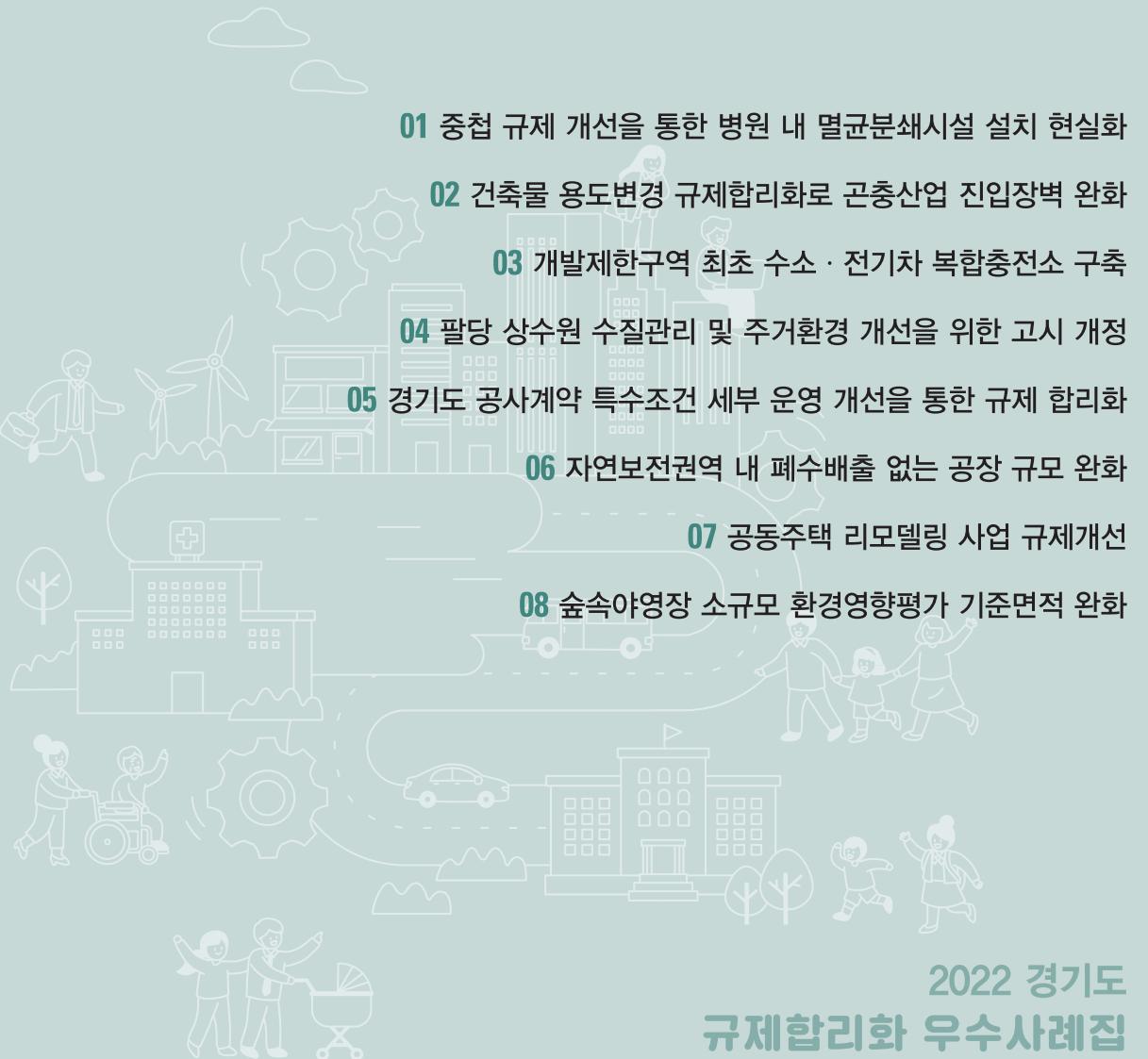
특히 안성IC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우 평택의 최종 행정경계가 진위면이지만 안성IC를 출발, 진위면에 이르기까지 안성과 용인 등을 지나는 고속도로구간을 운행거리에 포함, 62km로 산정한 탓에 노선을 신설할 수 없었다. 평택 비전·동삭동과 서울 강남을 잇는 6600번 버스도 50km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가까운 송탄IC가 아닌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이동해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행돼왔다.

김성탄씨(35·평택시 안중읍)는 "서울행 버스노선 신설근거가 마련됐다"며 "시외버스 노선이 부족한 불편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선 신설여지가 생겼다. 다만 신규 노선 도입은 준비와 검토 등을 거쳐 2년 이상 소요되며 사업타당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만큼 실제 신규노선 도입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기업애로 해소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01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

 추진부서 안양시 정책기획과 ☎ 031-8045-2211

개선배경



- 소각 위주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의 치명적 문제점
 - 고령화로 폭증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전국 14곳 뿐임.
 - 결국 의료폐기물이 2차 감염 위험을 싣고 소각장을 찾아 장거리 이동하게 되고, 소각장의 독점적 구조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급증하게 됨. 또한 소각 방식은 근본적으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고, 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최적의 해결책은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하여 부피를 대폭 줄여서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시설
 - 안전성(병원에서 바로 멸균처리로 감염 위험 예방), 경제성(처리단가가 낮은 일반폐기물로 배출), 친환경성(非소각방식)으로 선진국 등에서 이미 세계적 추세임.
- 그러나,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막는 중첩규제
 - ➊ 교육환경법 규제
 -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내) 폐기물시설 금지 규정으로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사실상 거의 차단되었음.
 - ➋ 건축용도 제한 규제
 - 불명확한 '병원의 부속시설' 해석 기준으로, 멸균분쇄시설을 병원의 부속시설이 아닌 별도의 폐기물시설로 해석할 때 건축 용도제한*으로 인해 설치가 불가
 - * 건축 용도제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주거, 상업 등)에 따라 특정 건축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
 - 즉, 지자체별 건축허가 담당자가 '멸균분쇄시설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해석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고 있었음.
 - ※ 관련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멸균분쇄시설 처리방식(예)



개선내용



개선 전

- 「소각 위주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의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대안은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이나, 중첩된 규제들로 인해 설치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신설로 교육환경법 규제 개선
 -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적 유권해석 도출로 건축 용도제한 규제 개선
 - ‘멸균분쇄시설은 병원의 부속시설로서, 건축용도 제한 없이 설치 가능’

추진과정

24

- '19. 10.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교육환경법 규제 발굴
 - '19. 1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지원(실패),
~20. 04. 경기도 시군순회간담회 안건 상정 등 중앙 건의 및 현장 소통 10회
 - '20. 09.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신설
 - ☞ 교육환경법 규제 개선(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가능)
 - '21. 02.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건축 용도제한 규제 발굴
 - '21. 03. 경기도 시군순회간담회 건의 등 중앙 건의 및 현장 소통 40회
~21. 07.
 - '21. 08.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출
 - “멸균분쇄시설이 「의료법」상 시설이면 병원의 부속용도로 설치 가능”
 - '21. 08. 국무조정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중앙 건의 및 현장 소통 44회
~22. 03.
 - '22. 03. 안양시–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협장협의회
 - '22. 04.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도출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멸균분쇄시설)을 「의료법」상 병원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다.”
 - ☞ 건축 용도제한 규제 개선(건축 용도제한 없이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가능)

개선 후

- 「교육환경법 규제 및 건축 용도제한 규제까지 개선하여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

개선효과



- (국민의 안전 · 생명 보호) 의료폐기물을 발생지인 병원에서 직접 처리하여 2차 감염 위험 최소화
 -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연 1,685억원(추산) 절감으로 의료보험 수가 합리화 기대
 - (탄소배출량 80% 감소) 소각 위주 방식의 문제 해결로 탄소중립 대응
 - (지역 균형 발전의 발판) 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 해결
 - 고령화와 신종감염병 등 미래 시대의 위기 대응, 바이오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의료폐기물 시장 진입 토대 마련



2년 5개월 만에 중첩규제까지 해결



중형급 이상 병원 전국 650곳

건축용도제한 없이

멸균분쇄시설 설치 가능해짐



세상을 바꾸는 규제혁신, 안양시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안양시 정책기획과 권구현 031-8045-2211

안양시의 2년 5개월간의 이야기를 대표로 전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시는 2019년 멸균분쇄시설 관련 교육환경법 규제 발굴 후 관련 기업은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도전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건의와 소통의 노력 끝에 2020년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뿐만 아니라, 2021년 더 큰 장벽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건축 용도제한 규제'였습니다.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지자체별 건축허가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건축 용도제한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역시 수용불가 답변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다수 부처가 얹혀 있는 '덩어리 규제'의 특성 때문에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양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규제 개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소속을 가리지 않고 전국과 소통했습니다. 각지의 다양한 기업, 의료계, 전문가들에게 무작정 연락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갔습니다. 소관부처를 직접 설득하기도 하고, 새로운 규제개선 논리를 3차례 걸쳐 개발하는 등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간담회」는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규제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도전의 과정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지고, 왜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을 얻는데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안양시의 2년 5개월의 도전은 중첩 규제 해결로 이어졌고, 이제 전국 병원에서 건축용도 제한 없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예방하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보험 등 국가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안양시는 이제 명실상부 규제혁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탰다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사할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타 지자체와는 차원이 다른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추진 동력을 지원해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규제개혁을 직접 추진하느라 늘상 바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을 비롯하여, 적극행정·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전 직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특히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국무조정실 등과의 소통은 담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규제혁신, 안양시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02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합리화로 곤충산업 진입장벽 완화

추진부서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 031-770-2652

개선배경



- 곤충산업은 식품, 화장품, 애완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년 꾸준히 성장 중이며, 이는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곤충사육장의 신축은 가능하지만, 신축 가능한 시설 간의 상호 용도변경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존재

[피해사례]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창고)을 활용하여 곤충사육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곤충사육장은 신축을 통한 허가만이 가능하여, 해당부지에 곤충사육장 운영을 위해서는 현 시설물 철거 및 시설 신축을 위한 경제적 비용 발생

※ 관련규정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개선내용



- | 개선 전 | 개선 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원보호구역 내 곤충사육장 운영은 신축을 통해서만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곤충사육장 운영이 가능 |
-
-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해 곤충사육장 운영이 가능해짐

추진과정
24

- '17. 03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으로 규제개선 건의
- '18. 03. 환경부 수용 곤란 회신
- '18. 06. 상급기관 협의 및 규제현장 방문
- '18. 06.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회의
- '18. 10. 규제신문고과 회의
- '19. 08.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 '20. 12.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1. 10.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 '22. 07.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창고 1동 곤충사육장으로 용도변경 완료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945호, 2021. 10. 20.)]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생략) 4.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13조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생략) 4.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차목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이하 생략)





- 곤충사육장 운영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 절감으로 곤충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곤충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 기반 제시



규제현장 및 곤충사육 농가 방문 (2018. 6.)



규제신문고과 환경부 회의 참석(2018. 10.)



규제합리화로 곤충산업의 진입장벽을 허물다.



☞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이명구 031-770-2652

상수원보호구역 내 곤충사육장 용도변경 범위 확대가 규제합리화라는 결실을 이루고, 그것이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에 수록될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양평군은 수도권 규제, 팔당 유역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로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 규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민원인께서 인근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곤충사육장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곤충사육장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으나, 곤충사육장은 신축은 가능하나 용도변경은 불가능한 시설물로 규정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 기관과의 협의, 현장 방문 및 논리 개발 등 오랜 기간, 여러 담당자를 거쳐서 4년 7개월여 만에야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이나 환경 관련 규제는 풀기 어렵다.’ 규제업무 담당자들의 공통적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규제 중에는 명백히 불합리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불합리한 규제는 담당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 해소된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알았으며,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민원인께서 찾아오셔서 이제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며 웃으시던 모습에서 규제합리화가 필요한 이유를 체감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3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 · 전기차 복합충전소 구축

 추진부서 광명시 기후에너지과 ☎ 02-2680-6455

개선배경

- 친환경차의 보급확대와 수요증가에 따른 인프라 기반시설 건립 필요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친환경 수소 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어려움
 - 정부 정책 및 시민 누구나 필요한 공익사업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과도한 부과로 인하여 필수 인프라 구축 저해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전기차충전소 구축은 가능하나, 「건축법」상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용도별 건축물 허가기준이 없어 수소차충전소와 전기차충전소를 복합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

* 관련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선내용



- 개선 전**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친환경 수소 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어려움
 -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 · 전기충전소 설치 시 개발부담금, 보전부담금 등 각종 행위에 따른 부담금으로 인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중도 포기하게 하거나, 사업추진 부담을 가중 시킴



- 개선 후**
- 개발제한구역 내 개별법령에 따른 부서별 협의를 통한 각종 부담금 부과 관련 법 개정 및 행정규제 기준 마련
 - 건축법 시행령 개정('21.05.04.)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충전소 건축행위 근거 마련으로 수소충전소와 전기차충전소를 복합으로 구축 가능
 - 보편적 에너지복지에 필요한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광명시의 행정지원, 기아차 부지제공 및 전기차충전소 설치 · 운영, 하이넷 수소차 충전소 설치 · 운영 등 민 · 관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 · 전기차 복합충전소 구축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전기차충전소의 구축 가능)

개정 전	개정 후 (차목 신설)
3. 제1종 균린생활시설	3. 제1종 균린생활시설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연합뉴스(2021. 06.08)

광명시, 기아차와 '수소+전기복합충전소' 조성 협약



업무협약서



'19. 04. 18. 수소충전소 구축 협력 방안제시(광명시 → 기아)

'19. 05. 30. 광명시, 기아차, 하이넷 3자 간 충전소 건립 협력 협의

'20. 02. 27. 수소충전소 설치업무 협약서 체결(기아 ↔ 하이넷)

'20. 04. 07. 2020년 환경부 수소충전소 공모 선정(국비 15억 확보)

'21. 03. 30. 수소복합충전소 실시설계 완료

'21. 05. 19.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개정으로 전기차충전소 설치 근거 마련

'21. 05. 25.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접수

'21. 06. 08. 광명 수소복합충전소 구축사업 4자 간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 기아(주),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기아차노조

'21. 09. 02.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21. 09. 13. 고압가스 제조 · 허가 신고수리(광명시)

'22. 05. 04. 기아 AutoLand 광명 수소복합충전소 상용운전 개시



- 인프라 구축 파급
 -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복합충전소 구축 사례로 충전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타 지자체의 학습 및 파급효과
- 보편적 에너지 보급
 -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광명수원고속도로 진·출입로 위치하여 수도권 서남부 수소차 충전을 담당하는 보편적 에너지 복지구현
- 민·관 협력 모델
 -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 제시 및 협업을 통한 선제적 행정사례 제시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충전소' 개소

광명 오토랜드에 수소충전 1기·전기충전 6기 설치
하이넷, 환경부 지원받아 연내 수소충전기 1기 증설



하이넷 광명 소하 수소충전소

[가스신문 = 최인영 기자] 수소충전기와 초고속 전기충전기를 갖춘 복합충전소가 경기도 광명에서 삼업충전을 시작했다.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명에서 문을 연 것이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 하이넷이 준공한 27번째 수소충전소인 하이넷 광명 소하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통해 수소 전기충전기를 설치했다. 4,381㎡ 부지에 하이넷 수소충전기 1기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초고속 충전 브랜드 이피트(E-pit) 전기충전기 6기를 갖추고 있다.

허루 최대 60대의 수소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260㎾ 초고속 충전기 4기와 100㎾ 급속 충전기 2기를 설치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까지 적용해 친환경 복합충전소를 구현하고 있다.

앞서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시운전을 하면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첫 사례로서 지난해 6월 기아, 광명시, 하이넷이 업무협약을 통해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72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04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부서 경기도 수질정책과 ☎ 031-8008-6922

개선후경



- 상수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로 인하여 규제 규모 미만의 소규모 공장이 산발적으로 입지하고 있어, 주거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는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 또한, 규제 규모 미만의 소규모 공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발생되는 폐수에 대한 개별처리·방류로 폐수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수질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장수 : 2010년 8,210개소 → 2019년 11,977개소 (연평균 377개소 증가)

개선행정



개선 전

- 폐목재 및 폐의류 재활용시설 입지불가
-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등

개선 후

- 폐가구공장 임여자재(폐목재) 및 폐의류 재활용시설 일부 입지허용
- 주거지역 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시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일정부분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조건부 허용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을 통해 폐수발생이 없는 폐목재·폐의류 재활용시설에 대해 일부 입지를 허용하고,
- 주거지역 내 난립한 소규모 공장 집적화를 위해 농림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의 일정비율(최대 50%)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짐.

- '19. 10. 道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 수립
- '19. 11. 팔당 특별대책지역 규제합리화 T/F 회의 추진
- ~ '20. 05.
- '20. 06. 30.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 마련 및 환경부 건의
- '20. 07. 관계기관 회의 및 국회 방문 협조 추진
- ~ '22. 02.
- '22. 02. 10. 특별대책지역 고시 행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
- '22. 05. 03. 팔당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개정 완료

개선효과



- 개별공장 재배치 · 집적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효율적인 폐수관리(공공처리) 와 엄격한 기준 적용(BOD 40mg/L → 10mg/L)을 통한 상수원 안전성 확보

(단위 : mg/L)

구 분	개별처리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				공공폐수처리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I	II	III	IV
BOD	40	80	120	30	10	10	10	10
TOC	30	50	75	25	15(25)	15(25)	25	25
SS	40	80	120	30	10	10	10	10
T-N	30	60	60	60	20	20	20	20
T-P	4	8	8	8	0.2	0.3	0.5	2

- 주거지역 내 난립한 공장을 이전하여 계획입지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폐수 발생 우려가 없는 일부 폐기물 재활용시설 입지허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05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세부 운영 개선을 통한 규제 합리화

추진부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 031-8008-5564

개선배경



-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제3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됨.
- 다만, 해당 사항의 운영을 위하여 공사계약의 신규 및 변경 계약 체결 시 발주청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시중노임단가 이상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미반영 시 산출내역서의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사항이 발생함.

[사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자율로 작성되는 사항으로 발주청에서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여할 수 없으며, 산출내역서 상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임의로 반영하는 경우 재료비 또는 경비 단가를 하향시키거나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등의 제경비를 하향시켜야 하는바 설계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특수조건」 세부 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정 취지를 강화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소지를 제거

개선내용



- 개선 전**

 - 계약(변경계약, 하도급계약 포함) 체결 단계에서 발주청이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여 미반영 시 반영을 요구

→

개선 후

 -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여 항목을 삭제하고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신설)' 징구 및 '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지급 대상공사'임을 사전 안내 후 계약 체결
 -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특수조건」의 제정 취지를 강화하고, 계약상대자의 불이익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함.

- '22. 01. 15. 경기도에 1차 공무원 제안
 - 「특수조건」 세부 운영 내 계약상대자의 권리 침해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 제안
- '22. 02. 16. 경기도 제안 불채택
 - 적정임금 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안 불채택
- '22. 04. 05. 경기도에 2차 공무원 제안
 -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작성 관여에 대한 불합리성에 따른 개선 제안
- '22. 06. 15. 경기도 제안 채택
- '22. 06. 17. 「특수조건」 세부 운영 사항 변경 실시
 -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관여 우려 사항 삭제 및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신설

개선효과

- 법령 및 기준의 규정 사항 외에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계약상대자의 불이익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특수조건」 제정 취지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수 있음.
-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대한 이행 확약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수조건」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06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 없는 공장 규모 완화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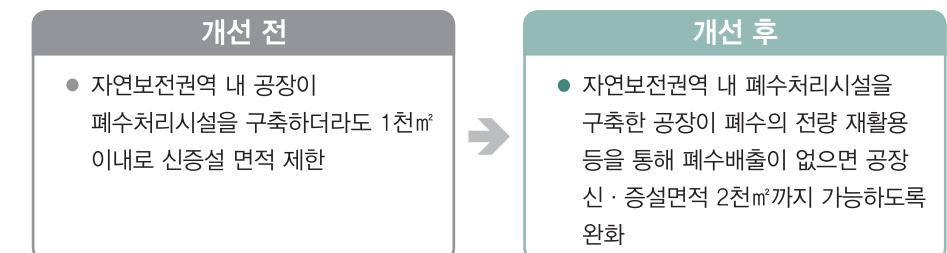
개선배경

-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은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공장 신증설 면적을 1천 m^2 이내로 제한
 -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은 신증설 면적 제한 없음(산집법 시행령 별표3)
-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아 취수원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공장 신증설면적 1천 m^2 이내로 제한
 - ※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사례] 여주시 소재 T사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 · 위탁처리하고 있지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필요한 만큼의 공장증설이 불가능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증설이 가능

개선내용

-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이라도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하여 공공수역으로의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신·증설 면적 확대(1천 m^2 → 2천 m^2 / 산업통산자원부)
 - 규제개혁신문고 제도를 활용하여 공장 신·증설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를 추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개정 예정('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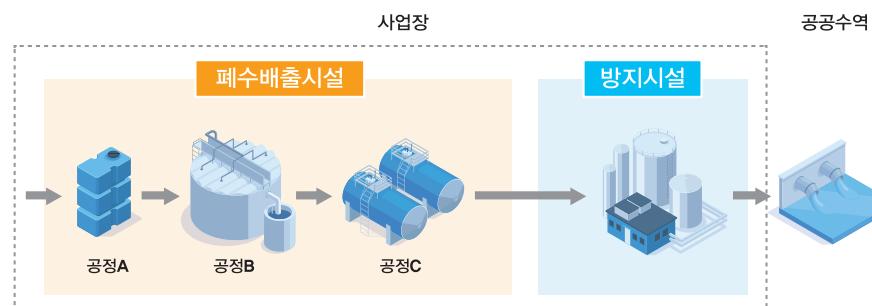
- '20. 08.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 관련 건의(규제개혁신문고)
'22. 07. 공장 신·증설 관련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 추진 브리핑(산업통상자원부)

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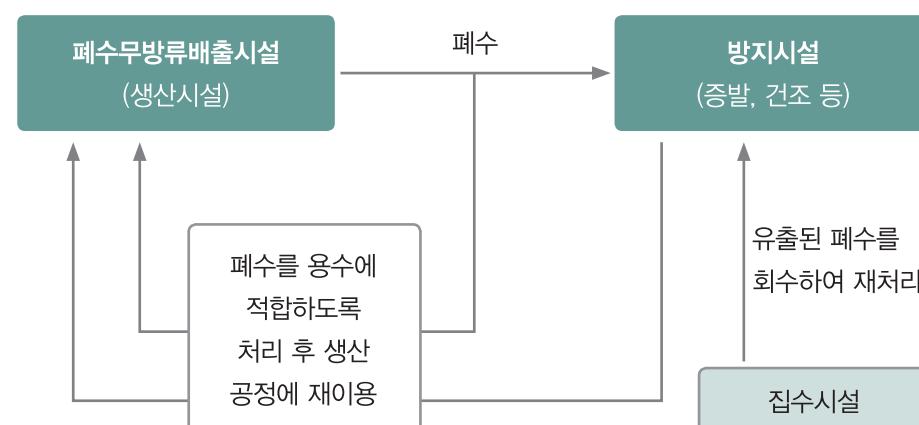
-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합리화를 통해 기업투자 확대 및 경제발전 환경 개선



[폐수배출시설의 개념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개념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07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108

개선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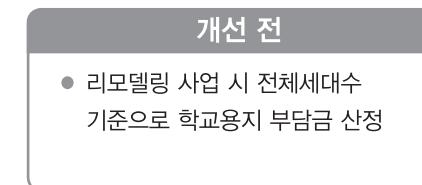


-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노후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대수선 및 증축 등을 통해 주거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임
- 리모델링 사업시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하여 증가세대수·증축면적기준이 아닌 전체세대수·전체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여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
※ 「도시정비법」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의 재건축사업은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개선행정



-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현재 학교용지법에 따라 전체 세대수로 산정하나,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하는 세대수를 산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건의를 수용함(교육부)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개정 예정('23년)

- '22. 04. 도-시군 순회 간담회 개최
'22. 05. 간담회 발굴과제 보완 및 중앙 건의
'22. 06. 규제개선과제 검토결과 수용 회신(교육부)

개선효과



- 사업성격이 유사한(노후주택 개선)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경제적 비용 절감

08 숲속야영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108

개선배경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시 실질 개발면적이 기준이나, 유사 성격의 숲속야영장은 전체 구역면적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제기



[사례] 경기도 **시에서는 2020년 **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을 조성함에 있어 개발되는 면적 6,000m²이 아닌 전체 구역면적 50,000m²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개선내용



- 숲속야영장에 실질 개발면적을 적용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 규모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설치운영되어 환경훼손이 우려되나, 산림생태계, 빛 · 소음 공해, 수질, 폐기물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 조정 검토(환경부)



* (시행일자) '22.9.14., 법령개정전 시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추진과정



- '22. 02. 지역 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자체 건의과제 발굴
- '22. 03. 지자체 건의 및 테마과제 보완 및 중앙부처 제출
- '22. 05. 중앙부처 협의결과 수용 회신(환경부)

개선효과



- 당초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서 여가 레저의 활성화로 개별적인 시설로도 조성될 수 있게 법제화된 것으로 유사 휴양시설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산림 여가 활동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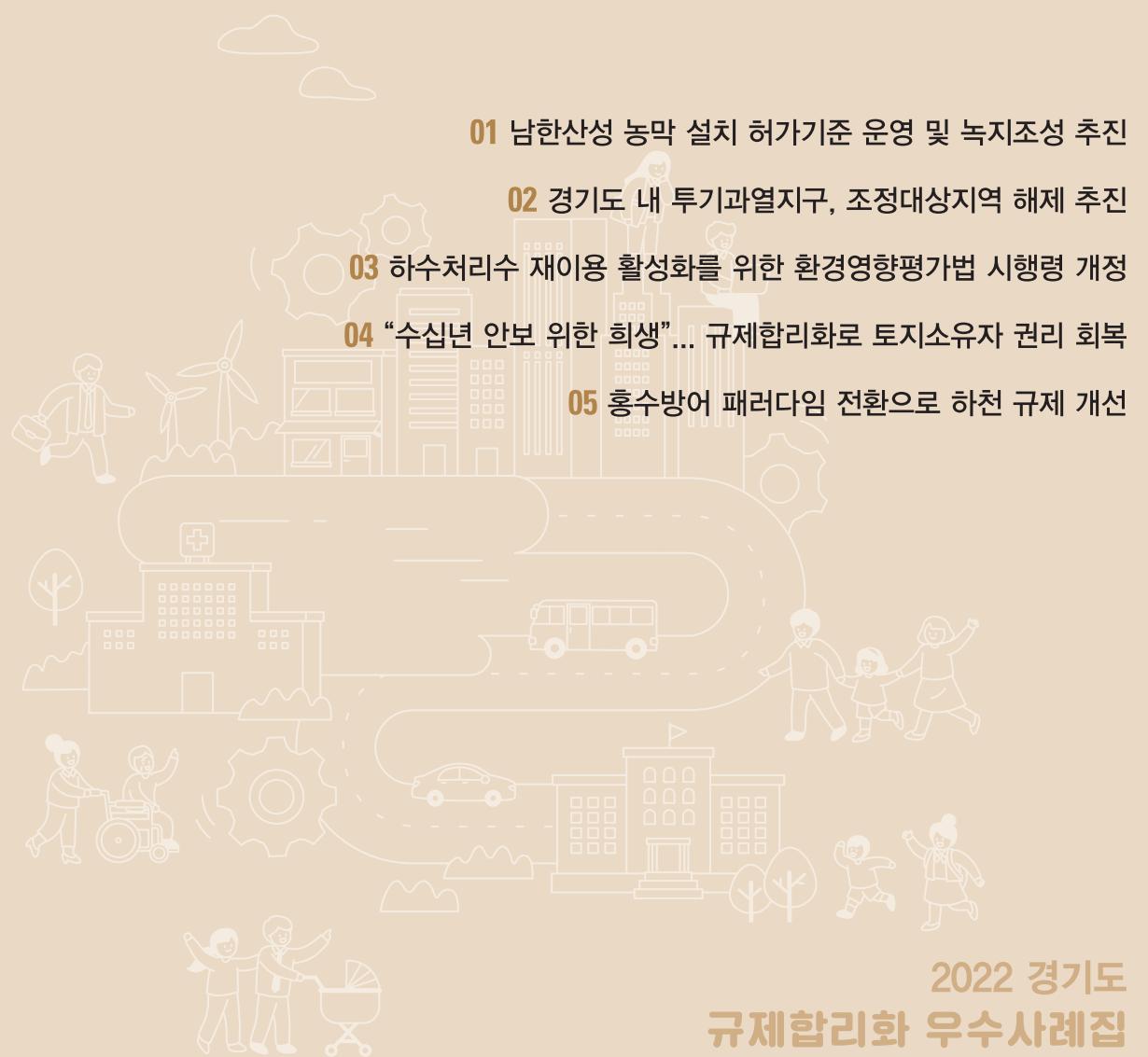
숲속 야영장



자연휴양림



공공행정



01 남한산성 농막 설치 허가기준 운영 및 녹지조성 추진

 추진부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031-8008-5186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개선배경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1.7.1. 시행)으로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세계유산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대규모 농막단지 형성으로 도립공원 및 문화재 훼손 우려
 - 남한산성 도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지 현황 : 184필지 182천㎡(성곽 내 142필지 108천㎡, 성곽 외 42필지 74천㎡)

개선내용



개선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1.7.1. 시행)으로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세계유산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대규모 농막단지 형성으로 도립공원 및 문화재 훼손 우려



개선 후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농막 설치 허가기준”을 마련('21. 6. 29.)하여 운영※ 허가기준
 - 산성리(남한산성 성곽 내) : 농막 시설 설치 불가
 - 산성리 외 지역(남한산성 성곽 밖) : 농막 시설 설치 제한적 허용*
- 남한산성 성곽 내 녹지조성(자연환경 복원) 계획 수립('21. 9. 15. 도지사 방침결재) 및 추진
 - 주요내용 : 성 내 주요 농지 매입 (공원시설 지정 후 토지 수용) 후 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는 설치 불가. 외관은 무광 밤색 및 검회색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원색 사용은 지양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농막 설치 허가기준 마련 및 운영

- 2021. 06. 24. 농막 설치 허가기준 법률자문 의뢰 및 회신
 - 회신내용 : '재량의 일탈 및 남용 사항 없음' 고문변호사 3인 의견 일치
- 2021. 06. 28.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기준 고시알림(환경부)
- 2021. 06. 29. 농막 설치 허가기준 검토보고
- 2021. 07. 20. 농막 설치 허가기준 알림(센터→성남, 광주, 하남)
- 2022. 01. 14. 남한산성내 농막 1개소 축조신고 업무협의(광주→센터)
- 2022. 01. 27. 농막 축조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 심의
 - 의견수렴 결과 : 센터의견인 '허용 불가 처리' 적정

남한산성 성곽 내 녹지조성(자연환경 복원) 계획 수립 및 추진

- 2021. 09. 15. 남한산성 도립공원 녹지조성 계획 도지사 방침결재
 - 소요예산 : 241.6억원(토지매입 145, 녹지조성 96.6)
 - 사업기간 : 2023~2027년(5년간)
- 2021. 10. 25.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알림(예산담당관→센터)
 - 심사결과 : 조건부(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추진
- 2022. 03. 31.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의회 본회의)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22. 05. 26. 공원시설 결정고시

향후계획 기본설계 및 토지매입 추진

개선효과



- 농막 설치 허가기준 마련 및 운영으로 세계유산 남한산성에 무분별한 농막 등 난개발 방지를 통해 역사 · 생태적인 경관 유지 및 일관된 인허가 처리 시행
- 남한산성 성곽 내 경관이 불량하고 농막 건축이 허용된 농지를 매입 후 녹지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역사 문화재 배후경관 개선 · 보전
- 녹지조성으로 자연생태 가치를 보존하고, 휴양 · 체험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생태관광 등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02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추진

추진부서 경기도 주택정책과 ☎ 031-8008-4932

개선배경



- (규제지역) 물가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가 성행(우려)하여 주택가격 안정이 필요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우려) 되어 대응이 필요한 지역
- (적용규제) 규제지역 유형에 따라 대출 · 세제 · 전매제한 등 규제 적용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추진 필요

개선내용



- 국토부 주거정책심의회의 의결로 경기도 일부 시 · 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구 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22.11.14 이전	14개(12개 市) 지역 과천, 광명, 하남, 성남(분당,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 기흥), 동탄2	28개(20개 市) 지역 과천, 광명, 하남, 성남, 구리, 안양(동안 · 만안), 의왕, 고양, 수원(팔달 · 영통 · 권선 · 장안 · 광교지구), 용인(수지 · 기흥 · 처인), 남양주, 화성, 동탄2,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22.11.14 이후	5개 지역 · 지구(4개 市) : 과천, 광명, 하남, 성남(분당, 수정)	

* 일부 시 · 군의 세분화된 지역표기 생략



2022. 경기도 주택시장 동향분석(10회)

경기도 내 규제지역 해제 추진계획 수립

경기도 내 불합리한 규제지역 지정 해제 관련 국토부 건의(5회 이상)



● (대출 규제 완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22년 11월 기준)

- 투기과열지구 해제 : LTV 비율 완화 0(15억 초과)~40%(9억 이하) ⇒ 70%
- DTI 비율 완화 40% ⇒ 50%(1주택자) ~ 60%(무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해제 : LTV 비율 완화 30(9억 초과)~50%(9억 이하) ⇒ 70%
- DTI 비율 완화 50% ⇒ 50%(1주택자) ~ 60%(무주택자)

● (세제 혜택) 양도소득세 등 완화에 따른 도민 부담 경감

● (전매 제한 해소) 주택 매입시 발생하는 전매 행위 제한 규제 완화

● (청약) 재당첨, 청약 자격 완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성남시 일부(중원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영통구·권선구·장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처인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세종특별자치시

2. 해제일 : 2022년 11월 14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현 행	조 정(2022.11.14.)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주1)} ,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주2)} ,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주3)} , 화성시 ^{주4)} ,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주5)} ,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주6)} , 오산시, 광주시 ^{주7)} , 의정부시, 김포시 ^{주8)}	과천시, 성남시 ^{주11)} , 하남시, 광명시
인천	옹구 ^{주9)} ,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전역 해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주10)}	해제

* 주1) 중원구 제외, 이외의 주석표시 생략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2. 해제일 : 2022년 11월 14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시·도	현 행	조 정(2022.11.14.)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주1)} ,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 개발지구 ^{주2)}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
·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03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추진부서 경기도 상하수과 ☎ 031-8008-6994

개선배경



- 환경영향평가 비대상인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5,0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도시지역 60,000㎡ 이상 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4호에 따라 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은 제외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음.

[피해사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시 수요처 재이용수 공급을 위해 공급관로는 대부분 도로나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실정으로, 공급관로를 도로에 설치 시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환경보전 취지와는 다르게 하수 재이용 사업의 규제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관련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시 도로에 매설되는 공급관로를 사업면적에 포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시 도로에 매설되는 공급관로는 사업면적에서 제외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완화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재이용수 사용기업의 신속한 용수 확보 및 산업 경쟁력 향상의 효과가 기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4호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간 생략) 마.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 및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설치사업(「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4. _____ _____ _____ (중간 생략) 마. _____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급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 한다) 설치사업(_____ _____)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삼성전자 핵심재이용 활성화 사례 」

매일경제	2022년 12월 01일 (목) 기업 13면
<h1>삼성전자, 年 1억7300만t 반도체용수 확보</h1>	
환경부·경기도 등과 협약	
하수처리장서 공급받은 물 독자기술로 초순수 만들네	방지자단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 행됐다.
삼성전자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 해 연간 1억7300만t에 달하는 공업용수 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용인·화성· 오산시 공공하수처리장의 배수수를 반 도체 사업장에서 필요한 공업용수 수준 으로 처리해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사업장에서 공급받게 된다. 각 사업장 에 공급된 배수수는 추가 공정을 통해 초순수로 만들어져 반도체 생산에 사용 될 예정이다.
30일 삼성전자는 환경부, 경기도 및 5개 시(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 오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 공단과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됐다. 협약식은 이날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에서 한진경환·환경부·경과부 및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지	반도체 라인 증설에 따라 2030년이 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필요한 공업용수가 현재의 2배 이상이 될 전망 이다. 지난 9월 '신한경환경전'에서 2030년까지 반도체 국내 사업장의 물
	취수량 증가 제로화'를 밝힌 삼성전자 는 취수량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안정적 으로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 한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가 공급 받을 수 있는 용수는 하루 약 47만4000t, 연간 1억73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경 대표이사는 "'초순수리는 깨끗한 물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하수 재이용수를 사용한다는 건 큰 혁파리(implication)"라면서 "'혁신적인 용수·이용 기법'으로써 '환경적이고 수자원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천 기자



- '22. 04. 25.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건의
- '22. 05. 10. 환경부 개정건의 배경 · 내용 등 설명 및 물 재이용사업 관련 자료 제공
- '22. 08. 30. 환경부 적극행정심의회 안건 상정
- ~09. 02. - (심의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선제적 조정을 위해 '법령 개정 전 시행' 결정

개선효과



-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측면
 - (산업지원) 기업체 용수공급 지원을 통한 산업 혁신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
 - (재이용율 제고) 현재 경기도 하수 재이용율 17.1%(전국7위) 상승
 - (물 여유량 확보) 기존 수원 대체를 통한 물 수요관리에 기여
 - (생활환경 개선) 약취개선 및 주민후생 개선 등 친수환경 제공
 - (기후변화 적응) 이수안전도 제고, 상시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구축
 - (물산업 발전) 고부가가치 물시장 육성 및 해외진출, 기술 고도화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 기대
- 지자체(시 · 군)의 기대효과
 - (지역개발 촉진) 수질오염총량 감소*, 지자체의 개발수요 증대 가능
 - * 경기도 하수처리장 보급(95.1%)을 고려시, 재이용은 최선의 오염부하량 색감 대안
 - (재정 인센티브) 물재이용 목표 달성 때, 인센티브(국고보조) 기대
 - (재이용 수익창출) 사업 및 참여 방식에 따라, 수입원 창출* 가능
 - * 하수원수 요금 징수(펀딩 직접 참여), 초과수익(BTO-a) 일부 할당 등
- 기업체의 기대효과
 - (ESG경영 실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업가치 충족, 제품판매 기여
 - (물이용부담금 절감) 팔당댐 원수에 부과 중인 170원/m³을 절약 가능
 - (물 안전 강화) 기후변화, 물문제 등으로부터 안전한 다중 공급원 확보

04 “수십년 안보 위한 희생”... 규제합리화로 토지소유자 권리 회복

 추진부서 경기도 하천과 ☎ 031-8030-3662

개선배경



- 수원에 위치한 서호천은 하천 중심으로 좌측에 군부대(공군 제10전투비행단)가 위치하고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하천폭 확장이 어려우니 그 반대편 사유지로 획일적으로 확장하여 서호천 하천구역 870,027m²가 설정되어 있었음.
-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위 가능

[피해사례]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사유지에서는 건축, 개발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하천관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의 공작물, 수목식재 등 제한적 행위만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관련규정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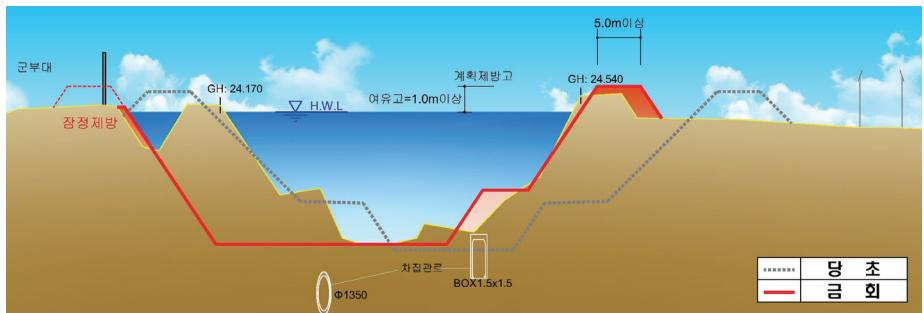
❖ 잠정제방을 도입하여 사유지 95필지 28,608m² 하천구역 제척

개선내용



- | 개선 전 | 개선 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9월 서호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제방부지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토지 870,027m²
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고 사유지에
대하여는 건축 및 개발행위 등
토지소유자 권리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부대 구간 잠정제방 도입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척된 사유지 95필지
28,608m²에 대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
등 토지소유자 권리 행사 가능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제방”은 지역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 제방을 설치하는 방법으로써 완벽히 홍수를 방어하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 도입한 사례가 없었으나, 군부대의 장래 이전 계획과 사유지의 과도한 규제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그룹의 기술적 검토 절차를 걸쳐 도입하였음. |

[잠정제방 도입 전후 비교 도면]



- '14. 09. 30. 서호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구역 결정
- '19. 05. 30. 서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09. 26. 주민설명회(주민건의사항 : 사유지 편입 최소화 요청)
- '21. 07. 01. 군부대 협의 지역에 따른 잠정제방 검토
- '21. 12. 01.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 과도한 사유지 편입으로 주민 불편등 치수안전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기하여 군부대 구간 잠정제방 도입에 대하여 “원안 의결” 심의 완료
- '21. 12. 22.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변경 고시(경기도고시제2021-5215호)

개선효과



- 하천구역의 제척(사유지 95필지 28,608㎡)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 실현
 - ※ 규제해소에 따른 지가 상승, 기존 공장 증설, 신규 개발 및 건축 행위 등 가능
- 서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시 민원 최소화 및 사업 면적 축소에 따른 예산(232억원) 절감
 - 보상비 축소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로 서호천 정비사업의 조기 완료 가능

05 홍수방어 패러다임 전환으로 하천 규제 개선

추진부서 경기도 하천과 ☎ 031-8030-3662

개선배경



- 2014년 수립된 원천리천 하천기본계획은 홍수방어를 위한 설계홍수량을 바탕으로 계획홍수위를 산정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홍수에 취약한 곳에 제방 계획 수립후 하천구역을 결정하고 행위제한 등 사권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 ※ 원천리천 하천구역 사유지 편입 현황 : 319필지 98,510㎡
- 국지성 호우 및 도시화에 따른 설계홍수량이 약 30% 증가되어 추가적인 홍수방어계획이 필요하나 하천 주변 주거지 및 삼성전자 단지가 위치하고 8차선 도로가 인접하여 계획홍수위를 반영한 교량 및 축제고 인상시 추가 사유지 편입 발생

[피해사례]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사유지에서는 건축, 개발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하천관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의 공작물, 수목식재 등 제한적 행위만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관련규정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적용허가 등)

❖ **홍수방어 패러다임 전환으로 사유지 133필지 17,063㎡ 하천구역 제척**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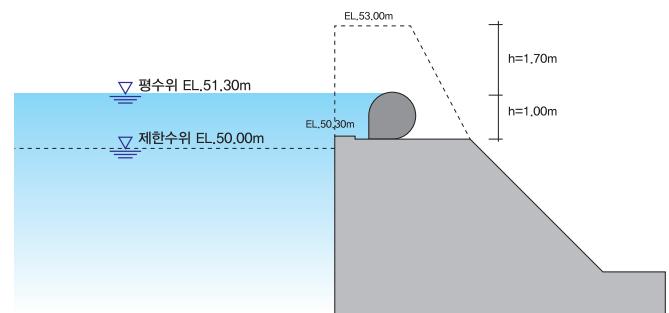


- | 개선 전 | 개선 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방어를 위하여 제방축조나 하도정비를 시행하는 선개념의 치수계획으로 계획제방부지(사유지 포함)에 대하여 하천구역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지 하천구역 : 319필지(98,510㎡) ● 홍수시 유수소통에 방해되는 교량 9개소 재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교의 경우 2.77m 도로인상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리천 상류에 위치한 신대·원천저수지의 홍수조절량(1,326천톤)을 확보하는 2차원적인 면개념의 유역중심 홍수방어계획 도입으로 기존 하천시설물의 치수능력 증대를 통한 사유지 규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지 133필지(17,063㎡) 하천구역 제척 ● 교량 재가설 9개소중 5개소 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교 교량상승고 (2.77m→0.62m) 감소 |



[저수수지 홍수조절 방안]

신대저수지



'14. 09. 30. 원천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구역 결정

'19. 05. 30. 원천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21. 05. 11. 저수지를 활용한 홍수저감방안 협의(수원시)

'21. 10. 15. 홍수저감에 따른 하류부 치수계획 변경 협의(수원시)

'21. 12. 01.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선개념→면개념 패러다임 전환)

'22. 07. 07. 원천리천 하천구역 변경 고시[경기도고시제2022-5124호]

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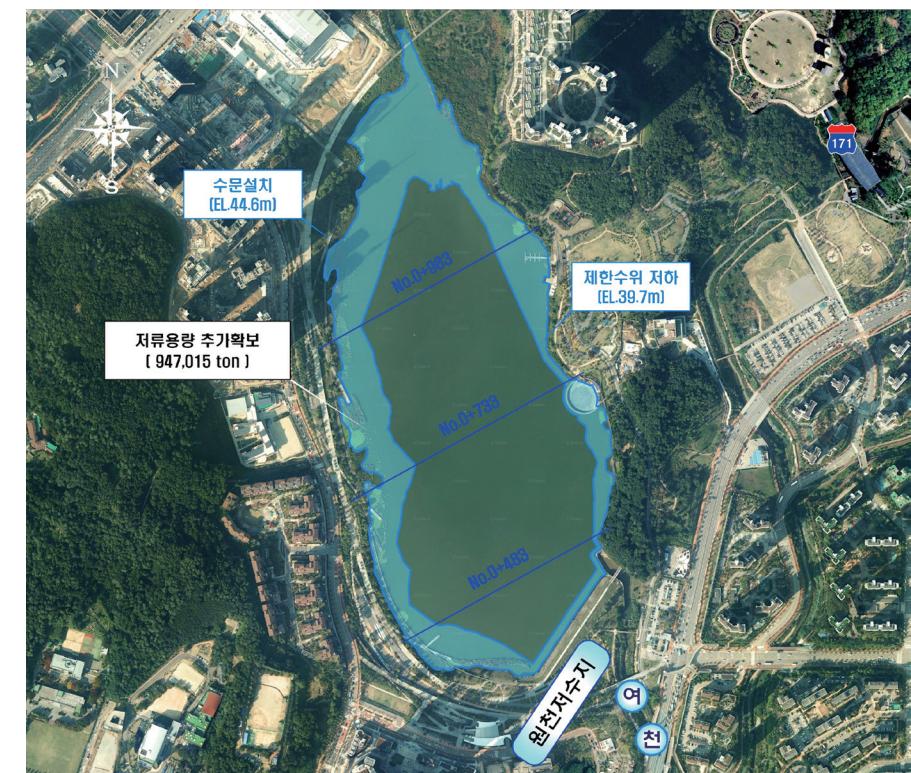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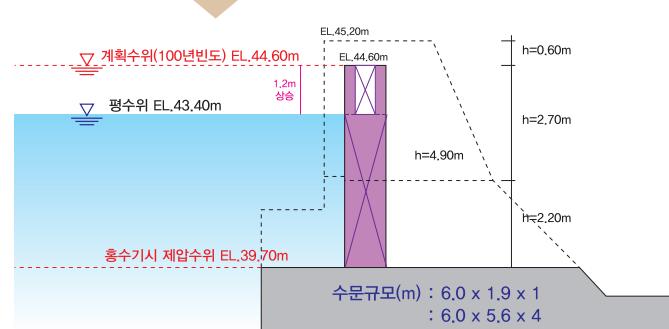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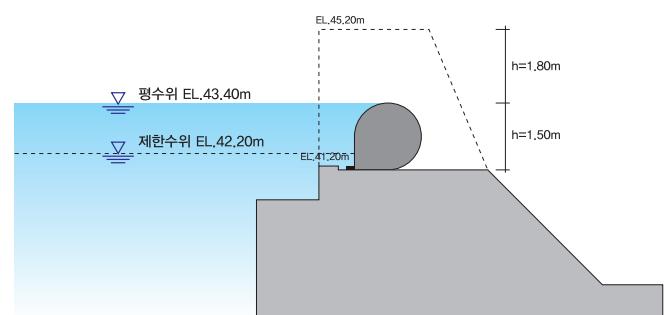


- 하천구역 제척(사유지 133필지 17,063m²)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 실현
※ 규제해소에 따른 지가 상승, 기존 공장 증설, 신규 개발 및 건축 행위 등 가능

- 저수지를 홍수조절지로 활용하는 홍수방어계획(유역분담) 도입으로 하천정비사업비 약 813억원 절감

※ 저수지 수문공사(110억원) 우선 시행으로 영통구청 및 삼정전자일원 홍수 피해 예방

원천저수지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발행일 2023년 1월

발행처 경기도 경제투자실 규제개혁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T. 031-8008-4129

펴낸이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규제개혁과장 최민식
규제정책팀장 호미자
주무관 박주은, 한성은, 박관서, 윤지영
